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제228호(號) 1927(昭和 2)년 9월 30일 금요일

○ 고 시(告示)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313호(號)

조선국유철도(朝鮮國有鐵道)
남만주철도주식회사소관철도(南滿洲鐵道株式會社所管鐵道) 화물연락운송규칙(貨物聯絡運送規則)을 아래[左]와 같이 정(定)함.
길장철로관리국소관철도(吉長鐵路管理局所管鐵道)

1927(昭和 2)년 9월 30일

조선총독 임시대리(朝鮮總督臨時代理)

육군대장(陸軍大將)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조선국유철도(朝鮮國有鐵道)
남만주철도주식회사소관철도(南滿洲鐵道株式會社所管鐵道) 화물연락운송규칙(貨物聯絡運送規則)
길장철로관리국소관철도(吉長鐵路管理局所管鐵道)

제1조(條)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소관철도(南滿洲鐵道株式會社所管鐵道) 경유(經由) 조선국유철도(朝鮮國有鐵道), 길장철로관리국 소관철도(吉長鐵路管理局所管鐵道) 간(間) 화물(貨物)의 연락운송(聯絡運送)을 하는 경우는 본(本) 규칙(規則)에 의(依)함.

제2조(條) 각(各) 철도(鐵道)에 있어서 운송(運送)에 관한 제규칙(諸規則)은 본(本) 규칙(規則)에 저촉(抵觸)하지 않는 한(限) 연락운송(聯絡運送)에 대하여 각자(各自) 선(線) 내(內)의 운송(運送)에 관하여 효력(效力)을 가짐.

제3조(條) 연락운송(聯絡運送)의 취급(取扱)을 하는 역소(驛所)는 아래[左]와 같이 함. 단(但) 취급상(取扱上) 특수(特殊)한 제한(制限)을 부가(附加)한 역소(驛所)에서는 그 제한(制限)에 의(依)함.

조선국유철도(朝鮮國有鐵道) 각(各) 역(驛: 함경중부선[咸鏡中部線], 함경북부선[咸鏡北部線] 및 청진선[淸津線]의 각(各) 역(驛) 및 간이역[簡易驛]을 제[除]함)

길장철도(吉長鐵道) 각(各) 역(驛: 두도구역[頭道溝驛]을 제[除]함)

제4조(條) 화물(貨物)의 접속역(接續驛)은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소관철도(南滿洲鐵道株式會社所管鐵道) 창춘역(長春驛) 및 단동역(安東驛)으로 함.

제5조(條) 화물(貨物)에 대하여는 대금상환(代金相換)의 취급(取扱)을 하지 아니함.

제6조(條) 아래[左]에 게시(揭示)한 화물(貨物)은 철도(鐵道)에서 특히 승인(承認)한 경우에 만 그 운송(運送)을 인수(引受)함.

- 1 화약류(火藥類)
- 2 자기(自己)의 차륜(車輪)으로 운전(運轉)하는 철도차량(鐵道車輛)
- 3 금화(金貨), 은화(銀貨), 동화(銅貨), 태환권(兌換券), 은행권(銀行券), 소액지폐(少額紙幣), 군용수표(軍用手票), 인지(印紙), 우표(郵票), 증권류(證券類), 귀금속(貴金屬) 및 회

금속(稀金屬), 귀금속(貴金屬) 및 희금속(稀金屬) 제품(製品), 보옥석류(寶玉石類) 및 그 제품(製品)

- 4 포의류(胞衣類), 대소변[屎尿], 기타(其他) 오예(汚穢)한 것
- 5 사체(死體)
- 6 1차적(車積)에 부재(不在)한 가축(家畜) 및 살아있는 동물[生動物]
- 7 소화물급화물(小貨物扱貨物)로서 1개(箇)의 중량(重量) 3톤(噸·ton), 용적(容積) 3백 입방척(立方尺), 길이[長] 18척(尺)을 초과(超過)한 것 또는 차급화물(車扱貨物)로서 1개(箇)의 중량(重量) 20톤(噸·ton), 길이[長] 33척(尺) 혹은 용적(容積) 천팔백 입방척(立方尺)을 초과(超過)한 것
- 8 열차(列車)를 지정(指定)하여 운송(運送)한 것
- 9 임시열차(臨時列車)로 운송(運送)한 것

제7조(條) 화물(貨物)의 급종별(扱種別)은 각(各) 철도(鐵道)가 정(定)한 것에 의하여 어떤 급(扱)에도 연락(連絡)의 취급(取扱)을 함.

제8조(條) 운임(運賃) 및 요금(料金)은 아래[左]의 각(各) 호(號)를 제(除)한 이외에 각(各) 철도(鐵道)가 정(定)한 것에 의하여 산출(算出)하고 병산(併算)하는 것으로 함.

- 1 길장철로관리국 소관철도(吉長鐵路管理局所管鐵道)를 1차급(車扱)으로 운송(運送)하는 화물(貨物)에 대한 발착수수료(發著手數料)는 길장철로국(吉長鐵路局)이 정(定)한 것의 3분의 2 금액(金額)으로 함.
- 2 길장철로관리국 소관철도(吉長鐵路管理局所管鐵道) 창춘역(長春驛) 발(發) 1차급(車扱) 목재(木材)에 대한 동(同) 선(線) 내(內) 운임(運賃)은 발역(發驛), 두도구(頭道溝) 간(間) 실제 총 킬로미터 수(公里程·kilometrage)에 의하여 계산(計算)함으로 함.
- 3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소관철도(南滿洲鐵道株式會社所管鐵道) 내(內)를 1차급(車扱)으로 운송(運送)하는 화물(貨物)에 대하여는 1미국톤(米噸·ton)당(當) 일금(一金) 50전(錢)을 저감(低減)함.

제9조(條) 운임(運賃) 및 요금(料金)은 아래[左]의 각(各) 호(號)에 의하여 수수(收受)함으로 함. 단(但) 화물(貨物)의 성질(性質) 및 가격(價格)이 수탁철도(受託鐵道)에서 운임(運賃), 요금(料金) 등(等)의 보장(保障)에 불충분(不充分)하다고 인정(認定)한 것은 모두 선급[現拂]으로 함.

- 1 조선국유철도발(朝鮮國有鐵道發)의 경우
조선국유철도(朝鮮國有鐵道) 및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소관철도(南滿洲鐵道株式會社所管鐵道) 선급[現拂]
길장철로관리국 소관철도(吉長鐵路管理局所管鐵道) 착불(著拂)
- 2 길장철로국소관철도발(吉長鐵路局所管鐵道發)의 경우

길장철로관리국소관철도(吉長鐵路管理局所管鐵道)

신금[現拂]

조선국유철도(朝鮮國有鐵道) 및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소관철도(南滿洲鐵道株式會社所管鐵道)

착불(著拂)

제10조(條) 전조(前條) 단서(但書)의 경우에서 착(著) 철도(鐵道)의 운임(運賃), 요금(料金)은 조선국유철도(朝鮮國有鐵道)에서는 방화(邦貨)로, 길장철로관리국 소관철도(吉長鐵路管理局所管鐵道)에서는 중국화폐(中國貨幣: 은양화[銀洋貨]) 또는 방화(邦貨)로 수수(收受)하는 것으로 함.

전항(前項)에 의하여 조선국유철도(朝鮮國有鐵道)에서 방화(邦貨)로 수수(收受)한 경우는 미리 국제연락운송(國際聯絡運送)에 적용(適用)되는 금은환산률(金銀換算率)에 의(依)함으로 함.

제11조(條) 화물(貨物)에 관한 손해(損害)는 이것 발생(發生)의 원인(原因)을 야기(惹起)한 철도(鐵道)가 분명(分明)한 때는 당해(當該) 철도(鐵道)에서 그 손해(損害)를 부담(負擔)하고, 그 발생(發生)의 원인(原因)을 야기(惹起)한 철도(鐵道)가 불명(不明)한 때 또는 원인(原因)이 경합(競合)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부담구분(損害腐談區分)이 불명(不明)한 때는 운임수득액(運賃收得額)에 의하여 안분(按分)하고, 각(各) 철도(鐵道)는 그 배상액(賠償額)을 부담(負擔)하는 것으로 함.

제12조(條) 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 제12조(條), 제15조(條)부터 제17조(條)까지, 제20조(條), 제24조(條) 제1호(號), 제2호(號) 및 제6호(號), 제25조(條)제2항(項), 제36조(條), 제46조(條), 제76조(條), 제77조(條)의 규정(規定)은 연락운송(聯絡運送)의 경우에 이것을 준용(準用)함.

부 칙(附則)

본(本) 규칙(規則)은 1927(昭和 2)년 10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